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김용범 의원 발의】



2017. 10. 23.

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崔光黙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83호로 2017년 10월 13일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도록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·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이력서상에 용모, 키,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, 부모의 직업, 재산상황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적용범위: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·출자 기관 (안 제3조)
- 다. 차별행위 금지: 이력서 등에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, 부모직업 등 기재란 삭제 (안 제5조)
- 라. 불리한 처우 금지: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.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,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.

「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O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범위를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·출자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차별행위 금지, 차별행위 해소 및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용모·키·체중 및 환경적인

요인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장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였으며.

- 안 제6조에서는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소속직원의 차별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 기관장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서는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 사,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취업희망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을 지양하고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고용정책 기본법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·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·제공에 관한 사항 과 인력수급 동향·전망에 관한 조사·공표에 관한 사항
- 2.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·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
- 3. 근로자의 실업 예방,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
- 4. 산업 · 직업 · 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·직업지도·직업훈련,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
- 6. 학력·경력의 부족, 고령화, 육체적·정신적 장애, 실업의 장기화, 국 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등(이하 "취업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- 7.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, 인력의 확보,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
- 8.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, 장려금,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(求人者)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소개·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(이하 "고용서비스"라 한다)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사항
- 11.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소개,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의4(모집·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모집·채용
- 2. 임금,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
- 3. 교육·훈련
- 4. 배치·전보·승진
- 5. 퇴직·해고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.

제4조의5(차별금지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
- 1.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
- 2.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
- 3.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
- 4.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·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

3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제7조(모집과 채용)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·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,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6.4.>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4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17.1.5.>

- 1. "고용"이란 모집, 채용, 배치·전보, 교육·훈련, 승진, 임금, 임금외 금품, 복리후생, 정년, 퇴직,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.
- 2. "차별행위"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및 국가, 용모, 혼인, 임신·출산, 가족상황, 병력, 학력,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(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)를 의미한다.
- 3. "기초심사자료"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, 이력서 및 자기소 개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 등)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그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·투자·출자기관(이하 "적용대상기관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 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장애인, 고령자, 여성,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차별행위 금지 등)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5.>

-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, 고령자,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조건(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), 출신지역,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신설 2017.1.5.〉

제6조(차별행위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- 1.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
- 2.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
- 3.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
- 4.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·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

하는 경우

제7조(불리한 처우 금지)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, 자료제출, 답변·증언, 소송,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, 전보, 징계,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차별행위 신고 등) ①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 다.

②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신청, 조사의뢰, 조사방법, 결과통지 등의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업무협조)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시 자치구·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,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개선권고)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,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5533호, 2013.8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375호, 2017.1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